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 216 호

제안일자 : 2016. 3. 21.

제 안 자 : 행정재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구민의 상 수상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불명확한 수당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어야 한다.” 로 명확하게 함(안 제2조)
- 나. “1명” 을 “1명 또는 1개 단체” 로 수정함(안 제4조제2항).
- 다. “출석의원” 을 “출석위원” 으로 수정함(안 제8조제6항)
- 라. “회피할 수 있다” 를 “회피하여야 한다.” 로 수정함(안 제9조제3항)
- 마. “다른 공적으로” 를 추가함(안 제13조제2항)
- 바 안 제15조 내용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.(안 제15조)
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상대상)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(이하 “구민의 상” 이라 한다) 수상대상은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어야 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1명을” 을 “1명 또는 1개 단체를” 로 한다.

안 제8조제6항 중 “출석의원” 을 “출석위원” 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3항 중 “회피할 수 있다” 를 “회피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이중표창의 금지 등) ② 다른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.

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남구민으로서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강남구 구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2조(수상대상) 강남구 구민의 상(이하 "구민의 상"이라 한다) 수상대상은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<u>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</u>이어야 한다.</p>	<p>제2조(수상대상)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</u>이어야 한다.</p>	<p>제2조(수상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</u>이어야 한다.</p>
<p>제3조(시상시기) 이 상은 매년 강남구 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</p>	<p>제3조(시상시기) ----- -----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"강남구"라 한다) -----. -----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-----</p>	<p>제3조(시상시기) (개정안과 같음)</p>

있다.

제4조(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구민의 상 종류는 다음과 같이 11개 부분으로 한다.

1. ~ 11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구민의 상은 각 부분마다 1명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심사기준)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민대상은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머니상, 효행상, 봉사상, 모범 청소년상, 모범 납세상 및 아름다운 기부상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

-----.

제4조(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-----
----- 13개
부분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통일안보상 개인부
문

13. 통일안보상 단체부
문

② ----- 부
문-----

부분-----
-----.

제5조(심사기준) -----

-.

1. -----

----- 모범 납
세상, 아름다운 기부
상 및 통일안보상 --

제4조(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

1. ~ 13. (개정안과 같
음)

② -----
---- 1명 또는 1개 단
체를 -----

-----.

제5조(심사기준) (개정안
과 같음)

1.~9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수상후보자의 추천)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분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또는 구민 15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.

제10조 (생략)

제11조 (생략)

제12조(이중표창의 금지 등) ①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있다.

②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.

제13조(상의 대리수상) 이 상을 직접 받을 자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(수상후보자의 추천) -----
----- 부분별
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 -----
-----.

제11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제12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제13조(이중표창의 금지 등) ① -----
----- 없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상의 대리수상) ----- 사

③ -----

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상후보자의 추천)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 (개정안 제10조와 같음)

제12조 (개정안 제11조와 같음)

제13조(이중표창의 금지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다른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.

제14조(상의 대리수상) (개정안과 같음)

<p>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.</p>	<p>람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
<p>제14조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수당) ----- ----- <u>범위에서 -----</u> -----.</p>	<p>제15조(수당) <u>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
<p>제15조 ~ 제16조 (생략)</p>	<p>제16조 ~ 제17조 (현행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</p>	<p>제16조 ~ 제17조 (개정안과 같음)</p>